



보도	2026.1.16.(금) 조간	배포	2026.1.15.(목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	책임자	국장	이권홍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장	박원규	(02-3145-7474)
	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장	곽정민	(02-3145-7790)
		담당자	팀장	박수홍	(02-3145-7770)

## 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- 소비자경보 「주의」 발령

### □ 소비자경보 2026 - 2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### 소비자경보 내용

- ◆ **(발령배경)**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
  -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\*
    - \* 판매 건수 : ('23년) 11,977건 → ('24년) 40,594건 → ('25.1~10월) 95,421건
  - 또한,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·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
- ⇒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(주의)를 발령

###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

- 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
- ②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·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④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.

- ◆ **(향후계획)** 판매 급증 보험사 대상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고,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판매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

## I 발령 배경

□ 달러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, 해외채권 금리 등을 기초로 보험금 등이 결정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※ [환율] 환율 상승 → 납입 보험료 증가, 환율 하락 → 수령 보험금 감소  
 [금리] 해외 금리하락 → 보험료 적립이율 하락 → 수령 보험금 감소

□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\*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
\*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

○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·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[참고] 달러보험 계약 판매 현황('22년~'25.10월)

① 달러보험 판매 건수(단위 : 건)



② 달러보험 판매 금액(단위 : 억원, 수입보험료\* 기준)

\* 수입보험료 : 초회 + 계속보험료



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(주의)를 발령합니다.

## II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

### 1 (환테크)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.

-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,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
  -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
-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, **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**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

#### 환차익 강조 민원사례

- A씨는 설계사가 계약시 **상품의 수익률에 대하여 과대포장**하였으며 연금보험이라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**환테크를 통한 수익창출을 유도**하는 설명을 하였다는 민원제기
- B씨는 외화(달러)로 투자 및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명듣고 **자녀의 교육비 사용 목적** 가입하였으나 **단순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상품**임을 가입 후 인지하여 민원제기
- C씨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환율 전망을 근거로 **환차익**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설계사가 이를 **확정 수익처럼 설명**하여 투자 성격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였다는 민원제기

### 2 (환위험)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므로, 납입시 또는 보험금 지급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·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-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**보험료 부담이 증가**하고, 보험금 수령시에 **환율이 하락**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**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**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(보험료 상승) 월보험료 \$500, 환율 1,300원/\$ → 1,500원/\$ : 월납 보험료 10만원(65만→75만) 증가  
(보험금 감소) 보험금 \$100,000, 환율 1,500원/\$ → 1,300원/\$ : 보험금 수령액 0.2억원(1.5억→1.3억) 감소

### 환위험 관련 민원사례

- D씨는 설계사가 계약 당시 “달러는 떨어지지 않는다”, “10년 후 해지 시 124% 수익이 난다”고 강조하면서 **환율 하락 시 위험성이나 수익률의 기준이 '달러 기준'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**며 민원제기
- E씨는 가입 후 몇 년이 지나 **보험료가 초기에 가입한 금액보다 더 많아져** 이유를 알아보더니 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원화를 더 내는거라 설명을 처음 들었으며, 총 납입 보험료(3,700만원)에 대비하여 **△25%정도 손실**을 보았다며 민원제기

### ③ (금리위험)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 · 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- 보험상품은 향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위하여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,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뉘어집니다.
-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하여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**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이 기대 하던 수준보다 적어질** 수 있습니다.

※ (예시) 월 보험료 \$1,000, 만기 10년 상품 : 가입 당시 공시이율 3.8% → 5년후 1.0%로 하락 시 만기시 보험금은 \$146,169에서 \$141,546로 **\$4,623(△3.16%)**만큼 감소

### ④ (중도해지)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.

-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되어 있는 **장기 상품**(5년 또는 10년 이상)으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으며, **중도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** 가능성이 있습니다.

### 중도해지 관련 민원사례

- F씨는 설계사가 달러가 오르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중 기능이 있어 좋은 저축상품이라 설명듣고 가입하였으나 **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50%도 되지 않는다**는 것을 가입 후 확인하고 민원제기

### Ⅲ 향후 계획

-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
-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
- 필요시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.